

책임자승인



문서번호 ESC - 220727 - 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15

2022년 7월 27일



einsung environment system

인성환경시스템주식회사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제2017-120010호
14967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11, 203호
TEL. 031-311-5451/ FAX. 031-629-5453
E-mail. einsung17@naver.com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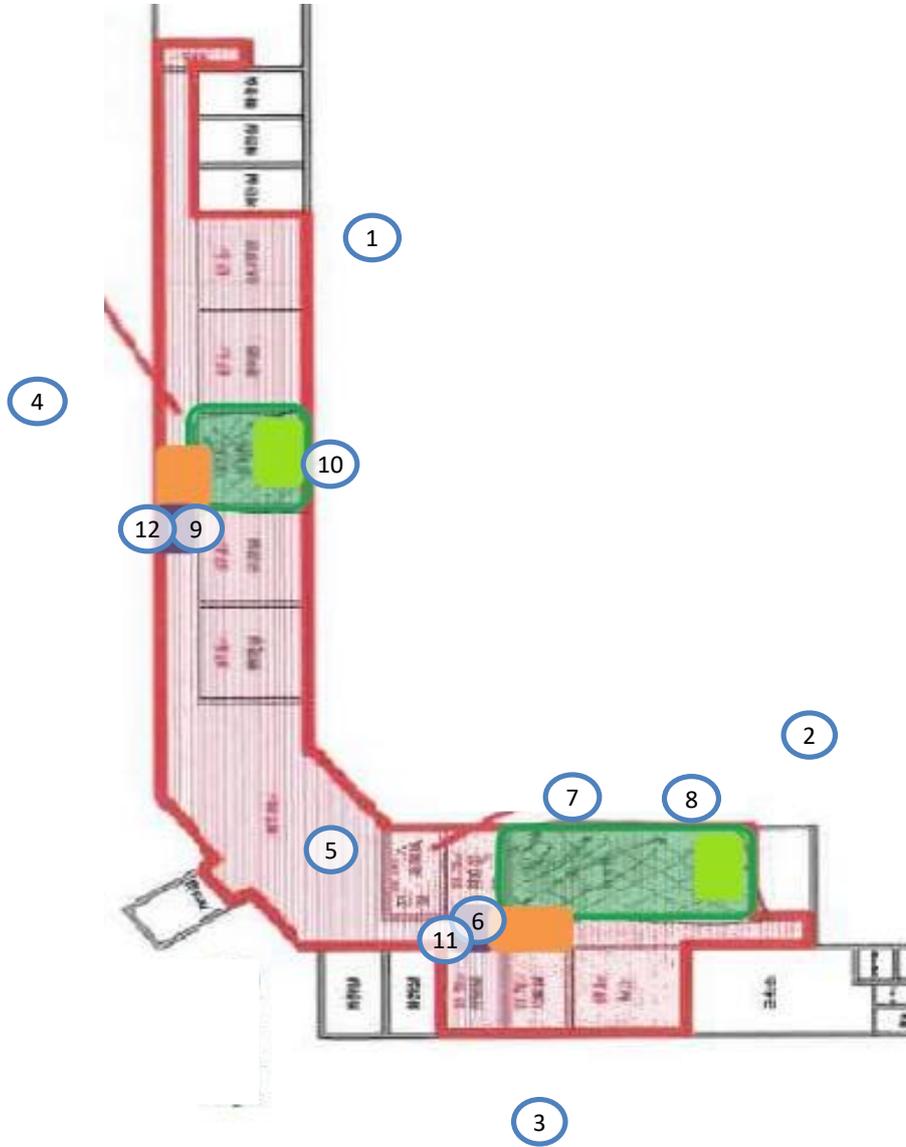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상호(대표자) 시흥초등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33-83-02368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15		
건축물	건물명 시흥초등학교	위치(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15	
	연면적 9,229.90 m ²	작업기간 07월 27일 (1일간)	
	석면건축자재 [길이(m) · 면적(m ²) · 부피(m ³)] 177 m ²		
측정기관	대표자(상호) 인성환경시스템주식회사 김 영 주	사업자등록번호 650-87-00621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11, 203호 분석자/측정자 : 김영주/조영근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지점	측정결과
	별첨		
측정 지점 위치(도식도)			
별첨			
측정지점	비산측정시작사진	비산측정종료사진	비고
별첨			
<p>「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제출합니다.</p>			
		2022년	월 일
제출인	시흥초등학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음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서

1. 측정결과

측정일시	07월 27일				
측정장비종류	LX40A		측정장비수량	12대	
측정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유량(L/분)	측정농도 (f/cc)	검출석면의 종류
	1	부지경계선	10	0.001	백석면
	2	부지경계선	10	0.002	백석면
	3	부지경계선	10	0.001	백석면
	4	부지경계선	10	0.001	백석면
	5	작업장주변(실내)	10	0.001	백석면
	6	위생설비입구	10	0.002	백석면
	7	위생설비입구	10	0.002	백석면
	8	음압기	10	0.003	백석면
	9	음압기	10	0.003	백석면
	10	음압기	10	0.002	백석면
	11	폐기물반출구	10	0.005	백석면
	12	폐기물반출구	10	0.004	백석면

2. 측정 지점 위치(도식도)



3. 현장사진

구분	사진		비고
부지 경계선			
	측정시작시간 8:00	측정종료시간 12:00	
부지 경계선			
	측정시작시간 8:00	측정종료시간 12:00	
부지 경계선			
	측정시작시간 8:00	측정종료시간 12:00	
부지 경계선			
	측정시작시간 8:00	측정종료시간 12:00	

구분	사진		
작업장 주변 (실내)			
	측정시작시간	측정종료시간	
	8:00	10:00	
위생설비입 구			
	측정시작시간	측정종료시간	
	8:00	10:00	
음압기			
	측정시작시간	측정종료시간	
	8:00	10:00	
음압기			
	측정시작시간	측정종료시간	
	8:00	10:00	

구분	사진		
위생설비입구			
	<p>측정시작시간 10:00</p>	<p>측정종료시간 12:00</p>	
음압기			
	<p>측정시작시간 10:00</p>	<p>측정종료시간 12:00</p>	
폐기물 반출구			
	<p>측정시작시간 12:00</p>	<p>측정종료시간 14:00</p>	
폐기물 반출구			
	<p>측정시작시간 12:00</p>	<p>측정종료시간 14:00</p>	

지정서

제2017-120010호

석면조사기관 지정서(최초)

기관명	인성환경시스템주식회사	
소재지	(14967)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 11 (월곶동, 상가) 203호()	
대표자성명	김영주	
지정사항	총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관할지역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대행(지정) 지역	전국

※ 준수사항

1.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7. 8.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 본 결과서는 법적 소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사의 허가없이 재발행될 수 없습니다.



einsung environment system

"석면조사·분석 전문기관"
인성환경시스템주식회사

